

##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핵종별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값 미만인 것으로 위원회로부터 확인을”을 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임을 위원회로부터 확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원자력관계사업자”를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제1항에 따라 자체처분을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(제3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외한다)는 제2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자체처분계획의 내용 중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내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측정 및 평가 방법이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제출된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내용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의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토하고,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⑨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8항에

따라 통지한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07조(방사성 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) ① 법 제71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(이하 “원자력관계사업자”라 한다)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로서 <u>핵종별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값 미만인 것으로 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방사성폐기물을 소각,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(이하 “자체처분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</u> | 제107조(방사성 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) ①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<u>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임을 위원회로부터 확인</u>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|
| 1. · 2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· 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· ③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처분계획서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의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토하고, 그 결과를 <u>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</u> 통지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<u>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</u> 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⑤ · ⑥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⑤ · ⑥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<신 설>

⑦ 제1항에 따라 자체처분을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(제3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외한다)는 제2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자체처분계획의 내용 중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내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측정 및 평가 방법이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제출된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내용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의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토하고,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⑨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8항에 따라 통지한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.